

식약처,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

- 8월 24일부터 5일간 6개 지방청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
- 소분·조합 시설 위생관리,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직무 준수여부 등 확인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‘맞춤형 건강기능식품’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·조합한 것으로,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,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‘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’와 상담한 후 맞춤형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.

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·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▲소분·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▲소비자 상담,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,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▲소분·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.

아울러 점검과 함께 소분·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여, 소분·조합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.

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,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·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.

<붙임>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안전 정보

담당 부서	식품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창근 (043-719-24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양수 (043-719-2452)



□ 올바른 구매 및 부당광고 주의

①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부터 확인

◆ 건강기능식품에는 일반식품*과는 다르게 '건강기능식품' 도안(또는 GMP) 또는 문구가 있습니다.

* 일반식품은 '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)'이 표시

건강기능식품	일반식품
 <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 >	 < HACCP 도안 >

② 정식 국내제조 및 수입제품 구입

◆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·성분이 함유될 수 있는 해외직구제품 보다는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 제조 또는 수입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.

국내 건강기능식품	수입 건강기능식품
·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(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·안전 > 건강기능식품 >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 가능	·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 (https://impfood.mfds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□ 안전한 섭취 방법 준수

① 제품 표시정보에 따라 섭취

- ◆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섭취량, 섭취 방법,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맞는 섭취를 권장합니다.

② 환자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 권장

- ◆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에 따른 이상사례*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 후 섭취하세요.

*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, 증상, 질병



- ☞ 스마트폰으로 위 QR를 찍으면 '건강기능식품 검색' 창으로 이동
→ 제품명(제조사)으로 검색한 결과, 의약품병용섭취 주의정보가 있는 제품의 경우 '의약품 병용섭취 주의정보'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③ 이상사례 발생시에는 전문가 상담 또는 신고

- ◆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이상사례 신고센터(1577-2488)에 신고하세요.